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95
----------	------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윤준병 · 이상직 · 김윤덕  
인재근 · 이해식 · 한병도  
김성주 · 안호영 · 김수홍  
신영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는 경우 점검 주체인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 환경관서에 가동개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생략) <u>&lt;신설&gt;</u>  ② (생략)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 환경관서에 가동개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